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비료 원료 다양화 및 부산물비료 사용량 증대로 우려되는 부정·불량 비료에 의한 농가 피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관리 강화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법률 제16980호, 2020. 2. 11. 공포, 2021. 8.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합리화 방안(국조실)에 따른 상한액(비료관리법은 2천만원)을 명확화하고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비료공정규격심의회 폐지(안 제2조 ~ 제8조)

- 법 개정예 따라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구성, 심의회의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수당 등 조항을 폐지하고, 제8조 우량비료 지정 시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으로 대체함

○ 수입비료의 위해성 기준을 통일하고 검사기준과 방법 명확화(안 제10조)

- 수입비료의 위해성 기준을 법 제4조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도록 변경하고, 수출국 검사성적서 발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위해성 검사기준과 방법은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개정함

○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변경(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자가 폐업할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법 개정예 따라 6개월 이상 1년 이내 휴업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 부여함

○ 비료수입업의 신고 시 보관창고 소재지 추가(안 제14조)

- 비료생산업 등록과 균형을 위해 비료수입업 신고 시 영업장 외에 보관창고 소재지까지도 추가하여 신고하도록 변경함

- 품질관리 기관이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권한 조정(안 제19조)
 - 법 제18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 위임된 품질 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자료·서류의 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법 제26조에 따라 농관원장에게 위임함
- 과징금 부과기준의 과징금 최고액 설정(안 별표 2)
 - 국조실 지침에 따라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확화하고, 위반행위별 과징금 액수의 표기 방식을 개월별 표시에서 1개월당 과징금 액수로 변경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의 2. 개별기준의 각 위반행위를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 조문과 동일하게 개정함
- 과태료 부과 시 위반차수 적용 규정 마련(안 별표 3의 1. 일반기준)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권익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차수 적용 규정 마련으로 부당한 권익 침해 예방하고자 함
-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3)
 - 휴업 및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명령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 조항도 개정함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해당 없음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부산물비료**”를 각각 “**비료**”로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심의회**의 **심의**”를 “**관계전문가 등의 검토**”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를 “**중금속 등의 위해성기준은 법 제4조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금속**”을 “**중금속 등**”으로,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수출국의 정부기관**”을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별표 1의 위해성기준**”을 “**위해성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기관
 2. 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3.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다)
-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방법은 제15조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과 방법을 따른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류 및 명칭**”을 “**종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산물비료를”을 “비료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폐업”을 “휴·폐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휴업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기간(휴업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영업장”을 “영업장 및 보관창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폐업”을 “휴·폐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휴업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 및 기간(휴업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중 “별표 3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설정·변경·폐지 및 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를 “설정·변경·폐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징수”를 “징수.”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한함

제1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보고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
 4.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다만,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한함
-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으며,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법 적용의 예외)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조의2(법 적용의 예외) ----- ----- ----- -----.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 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업(業)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평균 1.5톤 이하의 <u>부산물비료</u> 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1. ----- ----- ----- ----- <u>비료</u> ----- -----
2.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 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업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u>부산물비료</u> 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	2. ----- ----- ----- ----- <u>비료</u> ----- -----
<u>제2조(비료공정규격심의회 구성)</u>	<u><삭 제></u>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u>비료공정규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u> 를 둔다.	
② <u>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u>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
촌진흥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의 비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비료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1명

2. 농촌진흥청 소속 비료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3명

3. 지방자치단체 소속 비료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1명

4. 비료 및 농업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5. 비료의 생산자단체, 사용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4명 이내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와 부산물비료의 지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삭 제>

3. 그 밖에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삭 제>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에 간

<삭 제>

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삭 제>

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새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가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료를 우량비료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0조(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비료와 그 원료를 수입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통관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위해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이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제8조(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 ①

- 관계전문가 등의 검토-----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 ①

----- 중금속 등의 위해성기준은 법 제4조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한다.

② ----- 중금속 등-----

----- 법 제10조제2항-----

----- 다음 각호의 기관-----
위해성기준 -----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도지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생략)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 5. (생략)

_____.

1. 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
체단체를 포함한다) 기관

2. 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3.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 다)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방법은 제15조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과 방법을 따른다.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

-----특
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1. (현행과 같음)

2. ----- 종류

3. ~ 5.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제1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비료 생산업은 제1조의2에 따른 부산물비료를 생산하는 업으로 한다.

제13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변경 등의 신고) 비료생산업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14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비료의 중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 ① -

----- 별표 1과 ---.

② -----

- 비료를 -----
--.

제13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변경 등의 신고) ----- 법 제11조제4항 또는 제5항-----
----- 휴·폐업-----

-----.

1. ~ 4. (현행과 같음)

5. 휴업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기간(휴업기간은 1년 이내로 하
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

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영업장의 소재지

② 비료수입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제16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

-----.

1. ~ 4. (현행과 같음)

5. 영업장 및 보관창고-----

② -----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
휴·폐업-----

-----.

1. ~ 3. (현행과 같음)

4. 휴업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 및
기간(휴업기간은 1년 이내로 하
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

----- 별표 2와 --.

제19조(권한의 위임)

② -----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의 설
정·변경·폐지 및 부산물비료
의 지정·폐지와 이에 관한 고
시

2.·3. (생략)

4.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

5. (생략)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
료 채취,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

7.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 및 징수 <단서 신설>

8.·9. (생략)

<신설>

-----.

1. ----- 설
정·변경·폐지-----

2.·3. (현행과 같음)

<삭제>

5. (현행과 같음)

<삭제>

7. -----
---- 징수. 다만,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한함

8.·9.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
임한다.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
사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보고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
료 채취,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신 설>

요구

4.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다만,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한함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으며,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1. 공동시설

보관창고(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검량(檢量)·포장 장치(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추는 것

2. 비료별 생산시설

비료별	시설기준
가. 보통비료	
1) 질소질비료	반응장치 또는 피복장치(被覆裝置) 등 생산시설
2) 인산질비료	반응장치 또는 동력분쇄기 등 생산시설
3) 칼리질비료	동력분쇄기 등 생산시설
4) 복합비료	동력배합기(액상비료의 경우 반응장치 또는 용해장치를 말한다) 등 생산시설
5) 석회질비료	동력분쇄기 또는 소성로(燒成爐) 등 생산시설
6) 규산질비료	동력분쇄기 또는 동력채장치 등 생산시설
7) 고토비료(苦土肥料)	반응장치, 건조장치 또는 탈수장치 등 생산시설
8) 미량요소비료	반응장치 또는 동력배합기 등 생산시설
<u>9) 그 밖의 비료</u>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시설
나. 부산물비료	
<u>1) 부숙유기질비료</u>	발효시설 등 생산시설
<u>2) 유기질비료</u>	<u>동력분쇄기[증제(蒸製) 가죽분의 경우 찌는 장치] 또는 건조장치 등 생산시설</u>
<u>3) 미생물비료</u>	배양기 등 생산시설
4) 그 밖의 비료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시설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같은 날 생산한 같은 비료에 대하여 지역별 검사일시의 차이로 같은 위반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최초로 적발된 것에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에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과한다.

다.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3)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중 구리·아연 성분이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경우

라.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최근 1년간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구리·아연은 제외한다) 최대함유량을 2회 이상 초과한 경우

마.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u>영업정지 1개월당 과징금</u> 금액	비고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u>보관·진열·판매·유통 하거나</u> 공급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	<u>400</u>	
나.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법 제21조 제1항		

해당하는 비료를 <u>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u> <u>거나</u> 공급한 경우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u>500</u>	
2)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 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 보기 어려운 비료	<u>400</u>	
3)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 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 과한 비료	<u>500</u>	<u>1,000만원부터</u> <u>시작하여 개월당</u> <u>500만원을 추가</u> <u>부과한다</u>
4)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과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	<u>400</u>	
5)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 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u>500</u>	
6) <u>비료생산업자등이</u> 아닌 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비료	<u>500</u>	
7) 법 제11조에 따라 등록 하거나 법 제12조에 따 라 신고한 제조 원료 외 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 한 비료	<u>500</u>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신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릴[2)의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을 늘린다]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시험연구기관이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험연 구기관으로 지정을 받 은 경우	법 제30조 제1호	100	200	400
나. 시험연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 는 법 제4조의3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정 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 제2호	100	200	400
다. 비료생산업자가 법 제11조제4항 <u>또는 제5 항에</u> 따른 변경 또는 <u>휴 · 폐업</u>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지 않 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 호	50	100	200
라. 비료수입업자가 법 제12 조제2항에 <u>또는 제3항 에</u> 따른 변경 또는 <u>휴 · 폐업</u> 신고를 그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 호	50	100	200
마. 법 제14조제3항을 위 반하여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31조 제2항	40	60	80
바. 법 제24조제1항에 따	법 제30조			

른 <u>보고</u>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2) 판매업자·운송업자·창고업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3호			
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2) 판매업자·운송업자·창고업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법 제30조 제4호	125	250	500
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승계 신고를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4호	75	150	300
		125	250	500
		75	150	300
		<u>50</u>	<u>100</u>	<u>200</u>